손해보험에 있어 방재활동은 왜 필요한가?

● 머 리 말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발생 시 손해의 확산을 방지하 고 피해의 경감에 힘써야 한다는 손해방지 의무가 계 약자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손해방지의무란 계약자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활동을 말 한다. 그러나 소유자나 점유자(사용자 이하 방재주체) 가 사전에 충분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재전문 가나 방재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방지 활 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사고발생 시 인 적/물적 피해 확대와 더불어 제3자 배상책임까지 발 생할 수 있으며, 사고재발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불안 으로 국민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방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방재활동은 재난 예방이나 방 호와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의 제정, 방재설비 연구, 개 발, 홍보와 관리 운영상태의 점검, 화재위험성 평가 및 방호. 피난과 같은 재난관리 계획과 훈련뿐만 아니라 사후 복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 가입까지를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은 법령에 의한 강제적인 의무의 이행 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기준이나 권장사항에 의 한 자발적인 이행도 있다. 요즘에는 석유화학단지나 반도체공장 등 산업시설이나. 지하철역사와 같은 지하 시설, 초고층건물 등 각종 공공 및 생활시설이 대형화 되고 있고. 이에 비례해 위험 또한 커지고 있어 방재활 동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문화 및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방재기관 및 민간기업의 협력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방재활동은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정과 발 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안정화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여 국내외 손해보 험 업계도 방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재기관의 설 립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방재활동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은 보험료의 인하 및 보험의 사회적 책임인 보험사고 예방 비용으로 또 다시 사회로 환원되므로. 보험계약자와 사회 모두에 게 도움이 된다. 법령에 의한 방재활동은 최소한의 요 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보험업계가 손해율 개선을 위 해 요구하는 사항은 법령이상의 기준과 활동으로 방 재 주체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소화설비할인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본장에서는 화재폭발과 관련된 해외 및 국내 방재기 관을 살펴보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방재활동과 관련 된 개선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해 외 방 재 기 관

해외의 방재기관을 언급함에 있어 미국의 방재기관들을 빼놓을 수 없다. 설립과 발전 그리고 현재의 업무를 볼 때, 이들 기관들이 국내 민간 방재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재기관 중 손해보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재기관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M Global(Factory Mutual), UL(Underwriter Laboratories) 등이다. 이들은 민간 방재기관으로서 산업시설의 방재활동 기준을 확립하고, 화재사고를 경감시킴으로써, 손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가 설립하거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화재안전과 관련해 학계,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며, 화재안전 홍보와 협력을 통한 화재예방과 인명안전에 기여하는 방재기관이다.



NFPA Code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등 민간 화재안전기준이나 성능위주 설계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각종 시험을 통해 얻어진 물성정보를 제공하는 Hazard Rating System을 갖추고 있어 정부기관인 미국 산업안전청(OSHA)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FM(Factory Mutual) Global은 손해보험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업종별 공정이나 구조물 특성에 따른 위험과 이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재활동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L(Underwriter Laboratories)은 전기설비의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기관으로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화재에 취약한 전기, 전자기기 등의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손해보험사의 경영 안정화와 개인이나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방재기관으로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의 CNPP, 영국의 FPA, BRE, 독일의 VdS, 스위스의 SWISSI 등 다양하다. 이 기관들은 자국의 손해보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방재활동을 통하여 방재주체가 손실을 경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고, 방재활동설비에 대한 연구와 인증, 방재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국 내 방 재 기 관

국내의 화재 및 폭발과 관련된 방재기관은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다음에 소개할 방재기관 중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스설비의 안정적 운전과 근로자 안전이 주요 업무로 화재폭발의 방재활동은 포함하지만 소화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화재에 대응한 피난 또는 방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점검 및 자문하는 화재 전반의 방재활동 은 다른 방재기관의 역할로 남겨두고 있다.

화재폭발과 관련 있는 국내 방재기관 및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73년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중요 업무는 고압가스제조시설, 사용서설의 관리 및 취증에며 인화성 가

연성가스의 폭발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방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987년 설립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국내손해보험사가 1973년 설립 한 방재기관으로 국내 주요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보험의 요율 할인등급 의 사정 및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 연구 및 계몽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부터는 국내 특성에 맞는 화재기준인 한국화재안전기 준(KFS)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화재안전기 준은 국내 화재관련 법령 및 기준(기술기준)이 건물 및 업종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완하여. 국제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국내 실정에 맞도 록 제정한 민간 화재안전기준이다. 방재시험연구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부설기관으로 국내외 각종 규격 에 따른 시험업무, 방재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 구, 국내 방화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FLIK 품질인증 업무, 대형 산업시설의 위험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 재컨설팅 업무 및 방재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 하는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건설시험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분야의 연구기관 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와 정책개발, 건설 기자재의



조사, 시험 및 품질관리, 시설물 유지 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1983년 개원하였다. 동 연구원의 화재안전연구실에 서는 화재안전 및 방재에 관한 기술 개발연구와 정부 위탁업무로서 내화구조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용 기계, 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인 소방기기의 품질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방재청이 설립한 검정기관이다.

● 방 재 기 관 의 방 재 활 동 방 향

각 분야의 방재기관들은 설립목적이 정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많은 정보, 기술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방재기관간의 정보가공유된다면 방재주체에게 체계적인 방재활동 지원이가능해지고 효율적인 방재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사도 방재활동을 지원하기 수월해질 뿐

만 아니라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에 따라 명확하게 보 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방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 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줄 수 있다.

그러나 방재기관물의 설립 법령과 주관 정부부처가 각기 달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사와 협력하여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을 돕고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 방재기관들과 손해보험사의 방재활동 지 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방재기관들은 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을까? 방재기관은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방재주체는 관련 법령이나 방재기관의 요구나 권장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 이행할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을 우선 시하여 안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대형사고들이 연 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으로만 경각심을 가진 뿐 방재주체들의 방재활동은 강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건축 물이나 위험시설에 방재활동을 강제화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검사할 수 있는 방재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재활동은 강제법규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뿐, 자율적인 방재활동은 일부 대형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재기관의 방재활동의 지원 또한 법규상 대상이 정해져 있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방재기관이 공정안전관리제도와 같은 국 제기준의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나 많은 기업들이 인증절차에 신경을 쓸 뿐 보고서는 공정운전자나 정 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안전관리부서 캐 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마 저 든다.

화재 관련 방재활동은 더욱 취약해서 정기적으로 방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방재주체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건물주나 공장주들은 소방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에 비용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비생산적인 항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방재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제약이 심한 기술관련 법규로 규제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해석도유연하지 못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방재주체는 방재활동이 관할 소방서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방재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규에 정해진 규정들이 방재활동 분야에서 는 최소한의 사양임에도,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에 대 한 책임을 무조건 방재주체에게 지우는 과실책임주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어 방재주체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과 방재기관이 협력하여 방재주체로 하여금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함께 방재주체의 인식전환이 급선무이다. 더 나아가 방재기관은 현재 지원 사각지대의 방재주체에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방재주체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은 순환구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지 때문이다.

● 방 재 활 동 순 환 구 조 개 선 과 손 해 보 험 의 역 할 ●

손해보험사는 어떻게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미흡하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방재기관과의 연계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

국내 손해보험사는 방재주체의 방재활동 정보를 수집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관리조직은 방재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보다는 자사의 보험 인수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언더라이팅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비록, 미약하나마 방재활동의 전달자로서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나마도 기업이 주요 수혜자이며 개인이 혜택을 받는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오래 전부터 방재활동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개별 보험사 자체적으로 방 재기관을 만들어 방재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비용적 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며 효과도 미약하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어 공동으로 방재기관의 비용을 출연 을 하여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을 돕고 있다.

이것이 한국화재보험협회이다. 손해보험사는 한국화 재보험협회가 방재활동을 지원하면서 취득한 방재정보를 통해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을 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보험료 할인으로 돌려주고 방재주체는 그 비용으로 방재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선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과열경쟁과 방재주체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이러한 선 순환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화재보험 요율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 사항 중 방재활동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우량, 소화설 비할인 등의 산정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자에 게 방재활동의 개선을 통해 보험료 할인혜택이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나, 손해보험사에서 도 충분한 전문지상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



이다. 특히, 재산종합보험은 보험요율 산정 시 방재활동의 반영여부가 모호하고 최근엔 보험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이 보험 요율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최근엔 보험계약자들이 방재활동 정도를 보험료에 적극 반영하는 화재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방재활동의 반영이 모호한 재산종합보험을 선호함에 따라, 방재주체에게 방재활동을 권장하는데 더욱 어려움이었다. 현재 화재보험에서의 소화설비, 우량물건 등의할인율은 화재보험협회의 검사 결과를 각 사가 공유하므로,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시 동일한 물건에대해 각기 상이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만일, 계약자의 방재활동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방재활동을 독려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보다는 과당경쟁의 도구로 악용될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재활동을 하지 않는 계약자에게도 방재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 인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방재주체의 자율적인 방 재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업계를 혼탁하 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소화설비, 우량물건 등의 보험료 할인제도가 방재주체의 자율적 인 방재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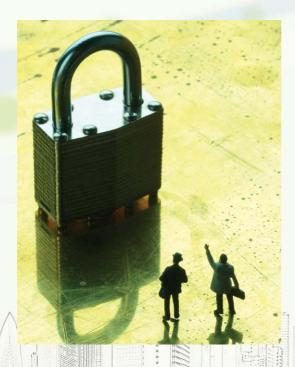
한편, 국내 손해보형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방재활동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점이다. 정보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 건물과, 일부 비특수건물에 국한되며, 특수건물 중에 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시스템(SMS) 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이나 소방방재청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방 재활동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특수건물을 제 외한 중소 근린생활시설,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민영 화된 공사 포함)의 공유시설은 보험료 할인혜택의 기회가 박탈되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방재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이의 활용이 필요하며, 손해보험업계는 이를 보험료에 적극반영함으로써 자율적 방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방재활동의 저해요인이 되는 과도한 경쟁이나 불완전(덤핑)판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 맺음<u>말</u>

손해보험에 있어 방재활동은 공익적 기능으로써 사회적 안전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사고발생 및 피해 경감으로 손해율을 감소시킴으로써 회사의 존속과 이윤추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 매우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국내의 실정은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고, 개선에는 난관이 많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재활동의 선순환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 여겨진다. 앞으로 방재분야에서 각 부문별 체질 개선과 부문 간의 연결고리가 매끄러워 진다면 안정적인 선 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향후 국내 손해보험(재<mark>물보험)</mark>시장이 성장하여 담보 력이 일정규모 이상 커지고, 방재주체의 방재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 며, 정부기관이 민간방재기관의 역할을 더 중시하여 방재주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둔다 면 부문간 연결고리는 보다 견고해져 선 순환구조 안 정화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미 국의 HPR(Highly Protected Risk)이나 일본의 STEP(Special Tailored Engineering Plan) 보험과 같은 상품이 개발될 것이다.

HPR(Highly Protected Risk)이나 STEP(Special Tailored Engineering Plan)보험제도는 설계, 시공에서 운영까지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지원하며 방재활동의 이행여부를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여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재활동 순환구조에 적합한 보험사의 방재활동 지원 시스템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재난보험의 의무화등으로 과실책임주의가 현실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재주체의 방재활동 선 순환구조의 역할이 더욱 더절실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